

채권채무재조정회계에 대한 고찰: 한국과 미국의 회계처리기준 비교*

이 창 우**

〈目 次〉

- | | |
|-----------------------------|---|
| I. 서론 | 2. 채권자가 부채의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
| II.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 | 3. 미국 회계처리의 문제점 |
| 1.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재조정의 경우 | IV. 사례를 통한 한미간의
회계처리 비교분석 |
| 2. 원리금의 변제를 통한
재조정의 경우 | 1. 자산의 제공, 주식의 발행
등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의
경우 |
| 3. 이자율의 완화를 통한
재조정의 경우 | 2. 채권채무의 조건변경으로
인한 재조정의 경우 |
| 4. 우리나라 회계처리의 문제점 | V. 결론 및 제안 |
| III. 미국의 회계처리기준 | |
| 1. 채무자가 자산이나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 |

I. 서론

채권채무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채무기업을 존속시키는 구조조정의 방법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1999). 즉, 채권채무의 재조정은 유동성문제나 높은 이자율 등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 행해지는 구조조정인 것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부도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보를 통한 채무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액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채무의 재조정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은 채권자의 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채권채무의 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하여 자산이나 주식을 제공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무와 관련된 조건들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조정시점까지 발생한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감면후 채권채무잔액에 대하여 자산의 이전이나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변제, 그리고 채무의 감면 또는 변제 후 잔존 채권 또는 채무의 명목가액에 대한 이자율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문제는 채권채무재조정 거래를 관련계정과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 모두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채무자가 자산이나 주식의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의 공정가액과 현존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채무조정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부채조건의 완화를 통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번째 견해는, 거래의 기본요건인 '교환(exchange)'이 발생하였고, 또, 현존하는 부채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채가 발행되었으므로 채권채무재조정 거래는 부채의 조기상환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부채의 조기상환의 경우와 같이 부채상환손익을 계상하게 된다. 편의상 이러한 주장을 '교환거래가설'이라고 하자. 두번째 견해는 이와 다르다. 즉, 채권채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자원(resource)이나 의무(obligation)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부채가 조건만 약간 변형된 상태로 계속 존속한다는 주장이다. 편의상 이러한 주장을 '조건변형가설'이라고 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채무의 재조정거래에 대하여 첫번째 견해와 유사한(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FASB Statement No. 15(1977)는 두번째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경우 미래에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며, 채권채무재조정의 영향은 전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현존하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재조정된 부채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액을 비교하여 각각 다른 형태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재조정된 채권 또는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명목상의 미래현금흐름액이 현존하는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을 구하여 이를 이용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계상하여 인식하고, 미래현금흐름액이 현존하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유효이자율이 음수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별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채조건의 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채무의 재조정거래에 대하여 미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행 부채의 조건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조정된 부채를 재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재조정시점의 현재가치는 재조정시점의 공정가액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같은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자산이나 주식의 제공과 같이 부채의 장부가액과 새로이 재조정된 부채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만큼을 재조정시점에서 채권채무조정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할인율을 유효이자율로 사용하여 기간별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이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a political process)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된 채권자들인 은행단의 영향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대출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되고, 따라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하에 금융기관 등의 채권단이 인식하여야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기준의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회계처리기준은 채무자가 인식하게 되는 채무조정이익금액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채무자가 현재 채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미래의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면 타당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처리기준을 비교분석하고, 또, 우리나라가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상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미국의 회계기준상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는데에 있어서 특히 양국간의 기간손익계산의 방법과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채권채무의 재조정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을 논한다. 특히 최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중에 관한 해석(1999)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된 미국의 회계기준내용을 살펴본다. 미국의 회계기준에 존재하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두 가지의 기본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맺음말과 함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

우리나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해석>을 1999년 9월 14일에 공표하였다. <해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들을 통한 재조정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재조정의 경우

채무의 액면금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동액만큼의 채권채무금액을 감액하여, 채권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채무자는 감면된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때 만약 원리금의 일부가 감면되고 그 대신 향후의 이자를 높여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의 감면이 없는 경우로 보아 후술하는 이자율의 완화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해석>은 이같은 회계처리의 이유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이 재조정시점에서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고, 또, 향후 높은 이자율에 의한 기간손익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원리금의 변제를 통한 재조정의 경우

이 경우는 자산의 이전이나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이다. 즉,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주식 등 지분증권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채권자는 변제대가로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 등의 공정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조정시점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채무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변제대가가 변제된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또, 이 때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전된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원리금(명목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의 명목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공정가액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자산의 시장가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게 된다.

3. 이자율의 완화를 통한 재조정외의 경우

원리금의 감면 또는 변제 후의 채무잔액에 대하여 잔여만기까지의 기간동안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이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상의 현금흐름을 당해 채권채무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이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는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할인율은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이란 재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당해 채권 발생시와 동일한 신용상태에 대한 재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 때의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재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재조정시점에서 산정된 신용가산이자율을 말한다.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회계처리의 이유는 현재가치의 계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악화로 인한 이자율 차이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채무발생시점의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적용할 할인율을 당초 계약상의 만기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의 연장된 기간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의 만기시점에서 만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은 그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 회계처리의 문제점

(1) 논리상의 비일관성

<해석>에 의하면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외의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만큼 채권채무금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우리나라 채권채무재조정외의 회계처리규정에 근간으로 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제공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액과 재조정대산인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손익의 인식문제와는 일관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해석>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처리의 논리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재조정외의 경우에도 재조정시점에서 그 이후 도래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하여 이를 재조정시점의 부채의 장부가액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큼 채권자는 손실을 인식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이다. <해석>은 이 경우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 등의 공정가액과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권자의 손실과 채무자의 이익으로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발행을 통한 재조정 경우에는 채권자의 '양보'가 이루어지며, 이때 '양보'의 의미는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금액의 공정가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은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작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약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이 경우 채권자의 '양보'가 요구될 필요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이들 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석>에는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 등의 공정가액이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이들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 등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논리상의 결함이다.

(2) 유효이자율의 문제

우리나라 <해석>은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제공 등을 통한 재조정 시점의 경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부채 조건의 변형, 예를 들어 원금의 감면, 이자율의 완화 및 만기연장 등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듯하다. 즉, 채권채무의 재조정시점에서 채권자는 손실을,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의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재조정시점에서 조정된 부채로부터 향후 발생하는 미래의 명목상의 현금흐름을 재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여야 그 시점의 공정가액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석>에는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논리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즉, <해석>이 규정하고 있는 할인율이란 '당해 채권채무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 또는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당해 채권채무의 발생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은 채권채무의 재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과는 다르다. 이는 결국 채권채무의 재조정시점에서 공정가액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에 의하면 또 부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적용할 할인율은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만기시까지는 채권채무의 발생시점의 이자율로 할인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은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의 이유로서 당초의 만기시점에서 만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은 그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현금이자액은 부채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²⁾

3. 미국 회계처리의 문제점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은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발행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원금의 감면이나 이자율의 완화 및 만기의 연장과 같은 부채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서로 다른 회계처리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채무의 재조정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발행을 통한 재조정의 경우에는 전술한 '교환거래가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 등의 공정가액과 재조정된 부채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에 대하여 채권자는 손실을 인식하고 채무자는 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같다. 그러나, 원금의 감면이나 이자율의 완화 및 만기의 연장 등과 같은 부채조건의 변형을 통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의 경우에는 '조건변형가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변형가설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채권단인 은행의 경우 채권채무의 재

2) 이 내용을 재조정시점과 기간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분개를 통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재조정된 미래의 현금흐름액이 부채의 현행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채권자의 분개)

(차) 대출채권(신)	xxx	(대) 대출채권(구)	xxx
(차) 현금	xxx	(대) 이자수익	xxx
		대출채권(신)	xxx

(채무자의 분개)

(차) 부채(구)	xxx	(대) 부채(신)	xxx
(차) 이자비용	xxx	(대) 현금	xxx
부채(신)	xxx		

(2) 재조정된 미래의 현금흐름액이 부채의 현행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채권자의 분개)

(차) 대출채권(신)	xxx	(대) 대출채권(구)	xxx
채무조정손실	xxx		

(또는 대손충당금)

(차) 현금(이자지급액)	xxx	(대) 대출채권(신)	xxx
---------------	-----	-------------	-----

(채무자의 분개)

(차) 부채(구)	xxx	(대) 부채(신)	xxx
		채무조정이익(특별이익)	xxx
(차) 부채(신)	xxx	(대) 현금	xxx

조정시점에서 인식하게 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또, 채무자의 경우에는 인식하게 되는 이익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이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하지만 부채조건의 변형을 통한 재조정의 경우에는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발행과 같은 경우와는 다른 회계처리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IV. 사례를 통한 한미간의 회계처리 비교분석

1. 자산의 제공, 주식의 발행 등에 의한 채권채무재조정의 경우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은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발행을 통하여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회계처리방법과 일치한다. 즉, 제공된 자산이나 주식 등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재조정시점에서 채권자는 손실을 인식하고 채무자는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예시하지 않고자 한다.

2. 채권채무의 조건변경으로 인한 재조정의 경우

원금의 감면, 이자율의 완화 및 만기의 연장 등과 같은 부채조건의 변경을 통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교환거래가설'과 비슷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조건변형가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 논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기본사례를 통하여 양국간의 회계처리방법상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기본사례 1) **

채권자인 갑은행은 채무자인 을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일자는 20x1년 1월 1일이며 대출금액은 ₩3,000,000 만기 3년에 이자율은 연10%이다. 이자의 지급은 연도말에 후급하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인 을회사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20x1년 7월 1일에 부도처리되었으며, 갑은행은 부도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명목가액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갑은행의 회계연도말은 12월 31일이다. 20x2년 7월 1일에 을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x2년 12월 31일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재조정을 결정하였다.

- 재조정기준일 : 20x2년 12월 31일
- 대상채권의 명목가액 : ₩3,000,000
- 재조정내용 : 만기 10년, 이자율 연3.11%(연도말 후급)

(1)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위의 (기본사례 1)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에 제시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회계처리

(가) 20×1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의 설정

(차) 대손상각비	600,000	(₩3,000,000 × 20%)
	(대) 대손충당금	600,000

(나) 20×2년 12월 31일: 재조정기준일

① 재조정후 채권의 현재가치의 계산

원금의 현재가치	: ₩3,000,000 × 0.3855433*	=	₩1,156,630
이자의 현재가치	: ₩3,000,000 × 3.11% × 6.144567**	=	573,288
	합계		₩ 1,729,918

* 현가계수 (기간 = 10, 할인율 = 10%)

** 연금의 현가계수 (기간 = 10, 할인율 = 10%)

② 현재가치할인차금: ₩3,000,000 - ₩1,729,918 = ₩1,270,082

③ 채권재조정 회계처리

(차) 대손충당금	600,000	
대손상각비	670,082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1,270,082

(다) 20×3년 12월 31일: 회계연도말

(차) 현금	93,300	(₩3,000,000 × 3.11%)
현재가치할인차금	79,692**	
	(대) 이자수익	172,992*

* ₩1,729,918 × 10% = ₩172,992

** ₩172,992 - ₩93,300 = ₩ 79,692

2) 채무자의 회계처리

(가) 20×2년 12월 31일: 재조정기준일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1,270,082	
	(대) 채무면제이익	1,270,082
(나) 20×3년 12월 31일: 회계연도말		
(차) 이자비용	172,992	
	(대) 현금	93,300
	현재가치할인차금	79,692

(2) 미국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위의 (기본사례 1)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먼저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액을 부채의 현행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① 재조정된 미래 현금흐름의 계산

원금 (10년도말 시점)	₩3,000,000
이자지급액 ($₩3,000,000 \times 3.11\% \times 10$)	<u>933,000</u>
계	₩3,933,000

② 현행장부가액

원금	₩3,000,000
미지급이자	<u>300,000</u>
계	₩3,300,000

위에서 ①의 미래현금흐름 합계액 ₩3,933,000이 ②의 현행장부가액 ₩3,300,000보다 크므로 이들을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을 구한다. 시행착오법을 사용하여 이 내부수익률을 구하면 연2%가 된다. 즉,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원금의 현재가치 : $₩3,000,000 \times 0.82035^*$	= ₩2,461,050
이자의 현재가치 : $₩93,300 \times 8.98260^{**}$	= <u>838,950</u>
계	₩3,300,000

* 현가계수 (기간 = 10, 할인률 = 2%)

** 연금의 현가계수 (기간 = 10, 할인률 = 2%)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새로운 유효이자율인 2%를 사용하여 기간이자수익과 이자

비용을 각각 계상하게 된다.

1) 채권자의 회계처리

(가) 20×2년 12월 31일: 재조정기준일

(차) 대출채권	3,300,000	
	(대) 대출채권	3,000,000
	미수이자	300,000

(나) 20×3년 12월 31일: 회계연도말

(차) 현금	93,300*	
	(대) 이자수익	66,000*
	대출채권	27,300

$$* \text{₩}3,000,000 \times 3.11\% = \text{₩}93,300$$

$$** \text{₩}3,300,000 \times 2\% = \text{₩}66,000$$

(다) 20×4년 12월 31일: 회계연도말

(차) 현금	93,300	
	(대) 이자수익	65,454*
	대출채권	27,846

$$* (\text{₩}3,300,000 - \text{₩}27,300) \times 2\% = \text{₩}65,454$$

2) 채무자의 회계처리

(가) 20×2년 12월 31일: 재조정기준일

(차) 차입금	3,000,000	
미지급이자	300,000	
	(대) 차입금	3,300,000

(나) 20×3년 12월 31일: 회계연도말

(차) 이자비용	66,000	
차입금	27,300	
	(대) 현금	93,300

(다) 20×4년 12월 31일: 회계연도말

(차) 이자비용	65,454	
차입금	27,846	
	(대) 현금	93,300

다음에 제시하는 (기본사례 2)는 미래 현금흐름액이 부채의 현행 장부가액 보다 작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석>에 제시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채권채무의 발생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하거나 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을 구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한 후 이 현재가치와 부채의 장부상 가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회계처리방법은 전술한 (기본사례 1)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처리방법은 생략하고 미국의 회계처리방법만을 제시하여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기본사례 2) ****

1999년 6월 채무자회사는 채권자회사에게 지급할 어음금액 ₩100,000과 이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9,000이 있다. 채무자회사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돕기 위하여 채권자회사는 다음의 조정안에 합의하였다.

- 현재의 미수이자액은 포기한다
- 어음의 원금을 ₩80,000으로 조정한다
- 어음의 만기일을 2001년말로 조정한다
- 어음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연9%에서 새로운 원금액에 대하여 매6개월마다 2%를 지급한다

① 재조정된 미래현금흐름

원금 (2001년말 만기)	₩80,000	
이자지급액		
$[(2\% \times ₩80,000) \times 5\text{회}]$	8,000	₩88,000
② 부채의 현행장부가액 : ₩100,000 + ₩9,000		109,000
	① - ②	- ₩21,000

앞에서 ①의 재조정된 미래의 현금흐름액의 합계액이 ②의 부채의 현행장부가액보다 작기 때문에 이들을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을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이자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1) 채권자의 회계처리

(가) 재조정일의 재분류분개

(차) 받을어음	88,000	
대손충당금*	21,000	
	(대) 받을어음	100,000
	미수이자	9,000

* 또는 대손상각비

(나) 매6개월마다 이자 수령시

(차) 현금	1,600	
	(대) 받을어음	1,600

(다) 어음의 만기일

(차) 현금	80,000	
	(대) 받을어음	80,000

2) 채무자의 회계처리

(가) 재조정일의 재분류분개

(차) 지급어음	100,000	
미지급이자	9,000	
	(대) 채무조정이익	21,000(특별이익)
	지급어음	88,000

(나) 매6개월마다 이자 지급시

(차) 지급어음	1,600	
	(대) 현금	1,600

(다) 어음의 만기일

(차) 지급어음	80,000	
	(대) 현금	80,000

V. 결론 및 제안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을 비교하면, 자산의 이전이나 주식 등의 발행을 통한 재조정의 경우에는 양국간에 차이가 없다. 양국 모두 '교환거래가설'의 입장에서 제공된 자산 등의 공정가액과 재조정된 부채의 현행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손실 또는 이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석>에 언급되어 있는 특이한 경우, 즉, 제공된 자산 등의 공정가액이 재조정된 채무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비현실적이고 논리상의 결함이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규정은 향후의 개정작업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채조건의 변형 등을 통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의 경우 먼저 미국의 회계처리방법은 자산 등의 제공을 통한 회계처리방법과 비교할 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논리의 일관성을 위하여서는, 재조정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조정된 미래 현금흐름액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한 후 이와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현금흐름액이 현행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현행장부가액을 현재가치로하는 유효이자율을 구하여 기간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한다. 또, 미래의 현금흐름액이 부채의 현행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재조정시점에서 손익으로 인식하고 유효이자율은 0으로 간주하여 기간이자손익을 계상하지 않는다.

부채조건의 변형을 통한 재조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회계처리방법의 기본개념은 자산 등의 제공의 경우와 일관된 개념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교환거래가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처리방법에는 이론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 이론적인 일관성을 위하여서는 재조정시점에서 부채의 장부가액과 재조정된 부채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액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가액인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의 개념은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자율의 개념이다. 또, 원리금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가치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명목가액만을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 또한 향후의 개정작업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FASB, "Accounting by Debtors and Creditors for Troubled Debt Restructuring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5, Stamford, Connecticut,
1977

FASB, "Accounting by Creditors for Impairment of a Loan",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14*, Stamford, Connecticut, 1993

증권선물위원회, "해석 55-67 :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최종개정 1999년 9월 14일

김성기, 중급회계, 제2판, 다산출판사 1999년